



항공 무선기 제품 영업비밀 해당성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항소심 사건

2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정15년(네) 제1010호
판결 일자	2003. 10. 21.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항소인)	원통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테크노브로드 주식회사, 2. Ya, 3. Yb, 4. 제너럴 리서치 오브 일렉트로닉스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2조 4항		
영업 비밀	항공 무선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 공동불법행위, 비밀유지계약, 저작권 침해		

02 사건 개요

원고는 시장조사나 해외출장에 의해 알게 된 지시에 근거하여 소송 외 기업(이하 'JIT')에게 상품의 개발 및 제조를 도급계약으로 위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JIT에게 개발비용을 지불하였으며, 개발된 상품 관련 정보들을 매입하였다. 이후 JIT는 원고를 위하여 피고 제너럴 리서치 오브 일렉트로닉스(이하 'GRE')에게 제조위탁하여 상품을 제조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출하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원고의 상품에 관해 영업비밀 의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JIT는 피고 Yb, Ya에게 원고의 상품과 같은 복사품 또는 유사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두 피고는 테크노브로드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테크노브로드는 이후 GRE에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물건을 생산케 하였고, 이는 원고의 상품 판로뿐만 아니라 매출에 큰 타격을 주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테크노브로드, Yb, Ya, GRE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행위, 저작권 침해 등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	피 고 (피항소인)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비밀유지계약이 있으며, 피고들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해당 정보는 성질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수비의무계약만으로 비밀관리성이 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는 직접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사용한 자에게도 유지되는 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된 정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들 또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JIT로부터 원고상품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형에 있어서도 유사한 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각 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들의 유사점을 가지고 바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성질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부속문서 등을 보거나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 전부를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비밀에 관한 수비의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서 말하는 ‘계약 이행에 따라 알게 된 값 또는 을의 업무상의 자료 또는 지식’이 막연하게 규정되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 이외의 법 주체들이 원고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각 상품의 유사성을 인정하여도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기능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바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개발자가 동일하면 소프트웨어가 동일할 것이라는 결론은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의무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의 존재가 비밀관리성을 바로 충족하지는 않는다.

비밀 관련계약에서 비밀정보를 정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생산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일한 정보를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